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시부터 보도가능	배포	

책임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요섭(02-2100-2950)	담당자	최치연 서기관 (02-2100-2951) 강련호 사무관 (02-2100-298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(02-3145-8020)		김병철 팀장 (02-3145-8022)

제 목 :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인가심사 FAQ 게시

- 2.22일부터 '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' 및 '인가심사 FAQ'를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에 게시할 예정
- '인가심사 FAQ'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Q&A 페이지 등에 제기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

1.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게시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'18.12.24일 발표한 「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」에 따라 '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'을 2.22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*에 게시할 예정

* www.fss.or.kr, 금융법규>해설서·매뉴얼>업무해설서

○ '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'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*을 주요 항목별**로 구분하여 심사내용, 심사방법, 제출서류 등을 명시

* 은행법령,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하위 규정·세칙에 규정

** ①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②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③사업계획의 적정성 ④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⑤인적·물적·전산설비의 적정성 등

○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인가신청 희망자의 편의성 제고

□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(1.31일 발표)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,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

2.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FAQ 게시

- ‘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’과 함께 온라인 Q&A 페이지*, 인가 설명회(1.23일)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한 ‘인가심사 FAQ’도 게시할 예정

* '18.12.26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, 업무자료>은행·중소
서민금융>인터넷전문은행 인가Q&A)에서 운영중

- ‘인가심사 FAQ’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前까지 온라인 Q&A 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임

3. 향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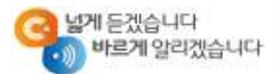
- 금융위원회(은행과)는 3.26(화)~3.27(수)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
-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(4~5월)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(5월 잠정)할 계획

<붙임>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(1.31일 발표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평가항목		평가내용	'15년	'19년
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			100	100
자본금 규모	•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할 예정일 것		60	40
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	•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		10	60
	•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할 것		30	
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			100	100
대주주 적격성	•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비롯한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,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		-	-
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	•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•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 •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		100	100
3 사업계획(혁신성)			350	350
사업계획의 혁신성	• 차별화된 금융기법,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 •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것		250	250
경쟁 촉진	• 기존 은행산업,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			
금융 발전	•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,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		50	70
해외 진출	•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		50	30
4 사업계획(포용성)			140	150
사업계획의 포용성	• 서민금융 지원,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		100	120
영업내용·방법의 적정성	• 영업내용·방법이 법령,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		-	-
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	• 소비자보호체계·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		40	30
5 사업계획(안정성)			210	200
사업계획의 안정성	•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•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것 •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		50	100
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	•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,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,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것		40	25
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	•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		40	25
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	•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		-	-
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	• 리스크관리체계·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		40	25
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	•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•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		-	-
내부통제·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	• 이사회의 경영진의 관계,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,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적합할 것 • 임직원의 법규준수,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•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,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		40	25
기타	•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, 감독기관의 감독·검사 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		-	-
6 인력·영업시설·전산체계·물적설비			100	100
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	•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		-	20
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	•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		-	20
전산체계, 그 밖의 물적 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	•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·바이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할 것 등		100	60
※ 외국 금융회사(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)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			-	-
합 계			1,000	1,000

* (-) 표시 항목은 금감원에서 법령 등 준수여부 심사